

온라인 아동보호를 위한 ITU의 활동

■ 박민정*

1. 개요

해마다 전 세계 가정의 인터넷 연결수는 증가하고, 이와 함께 아동의 인터넷 사용률도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의 발전과 확산은 아동들에게 온라인 교육, 게임·음악 등 문화생활 제공, 무수한 정보에 대한 접근의 기회 등 무수한 이익을 제공해주는 한편, 다양한 역기능과 역효과들을 함께 가져오고 있다. 불법콘텐츠의 유통, 사이버 폭력, 포르노, 온라인 게임 중독, 온라인 사기, 사이버 상 인종차별 등 온라인 세상에서 아동이 노출되어 있는 위험은 점점 더 다양하고 심각해져 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인터넷의 특성상, 다른 사이버 이슈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아동보호 문제도 한 개별국가의 독자적 문제가 아닌 국제적 수준에서 협력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이 확립되어야 하는 이슈이다. 이에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온라인 아동보호를 위한 국제기구를 포함한 정부, 산업, 기구,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협력활동 강화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이슈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 논의 동향을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의 ‘온라인 아동보호(Child Online Protection, COP) 이니셔티브’와 ‘ITU 온라인 아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협력실 전문원, (02)570-4345, mjpark@kisdi.re.kr

동보호 작업반(Working Group on Child Online Protection, WG-CP)'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ITU 내 온라인 아동보호 활동 현황

ITU는 2005년 튀니지에서 개최된 제2차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 WSIS)¹⁾를 통해 WSIS 활동계획(action line) C5 'ICT 이용에 있어 신뢰구축 및 보안'의 촉진자(facilitator)로 발탁되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ITU는 사이버 보안을 연합의 최우선순위 항목 중 하나로 선정하고,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 제고, 관련 문화 형성, 회원국에 대한 기술적 지원, 최종이용자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도구개발 등을 추진해왔다. 그 중 한 방법으로 2007년 5월 정부, 산업, 국제기구,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글로벌 사이버 보안 어젠다(Global Cybersecurity Agenda, GCA)'를 발족하여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제적 대응 강화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ITU는 나아가 인터넷 상에서 가장 활동적이면서 또한 가장 취약한 사용자인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8년 11월, GCA 하에 COP 이니셔티브를 착수하였다. COP 이니셔티브는 아동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온라인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목표를 설정하였다: ① 사이버공간상의 아동에 대한 주요 위협 및 취약점 파악, ② 사이버공간에서의 아동 보호 이슈에 대한 인식 제고, ③ 위협을 최소화하는데 도울 수 있는 실용적 도구의 개발 및 보급, ④ 국제사회 내 관련 지식 및 경험 공유. 아동을 위한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본 이니셔티브에는 국제연합아동기금(UN Children's Fund, UNICEF), 국제연합지역간범죄처벌조사기관(United Nations Interregional Crime and Justice Research Institute, UNICRI)과 같은 UN기

1) WSIS는 21세기 정보사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글로벌 정보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가간 중요원칙을 정립하고자 마련된 정상회의로, 제1차 회의는 2003년 스위스에서, 제2차 회의는 2005년 튀니지에서 개최되었다.

구뿐만 아니라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 민간 기업, 유럽방송연합(European Broadcasting Union, EBU), 유럽정보보호전문기관(European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Agency, ENISA),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등 정부간기구, Save the Children, Child Helpline International 등 NGO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COP 이니셔티브는 2009년 5월에 ‘온라인 아동보호 지침’ 초안을 발표하고, 회원국 의견수렴 과정 거쳐 같은 해 10월에 최종확정안을 발표하였다. 이 지침은 아동, 부모 및 교육자, 업계, 정책결정자 등 대상자를 총 4개로 구분하여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으며, COP 이니셔티브 웹사이트(<http://www.itu.int/cop>)를 통해 ITU 공식 언어인 6개 언어²⁾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ITU 통신개발국(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Bureau, BDT)은 본 이니셔티브 활동의 일환으로 2009년 말에 온라인 아동보호에 대한 회원국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온라인 아동보호 측정을 위한 통계 프레임워크와 지표 개발에 착수하였다.³⁾

한편, 2009년 ITU 이사회는 결의 1306을 통해 온라인 아동보호를 위한 이사회 작업반(WG-CP)을 설립하고, 해당 이슈에 대한 회원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관련 작업을 진척시킨 후, 매년 이사회 및 전권회의에 활동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3. 제1차 온라인 아동보호 작업반 회의 결과

제1차 WG-CP는 3월 17일, 18일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 ITU 본부에서 개최되어 (의장: 이집트, Shrif Hschem 박사), 총 60여명의 회원국 및 부문회원 대표가 참가하였다. 금번 회의는 WG-CP의 부의장을 선출하고, 작업방법(Terms of Reference)을 검토하며, ITU 사무총국과 BDT의 정보 보고서 및 회원국 기고문 발표를 듣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주요 회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2) 영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아랍어.

3) 통계 작업 관련 첫 결과는 WSIS 포럼(2010년 5월 11일~13일, 제네바)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1) 정보 보고서 발표

ITU 사무총국은 성공적인 온라인 아동보호 활동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전략 도출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이니셔티브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사무총국은 나아가 성공적인 온라인 아동보호 활동을 위한 전략을 다음의 <표 1>과 같이 ① 법적조치, ② 기술 및 절차적 방법, ③ 조직구조, ④ 역량개발, ⑤ 국제협력의 5가지 측면(pillar)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표 1> COP 전략

5개 측면 목표		법적 조치	기술 및 절차적 조치	조직 구조	역량개발	국제협력
1	주요 위험 및 취약점 파악	[1.1]&[2.1] 전 주요산업에 걸친 약속 개발		[3.1] 조직적 취약성 확인		[5.1] COP 위협측정 글로벌 보고서
2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인식 제고			[3.2] COP 용 지표 정의/규정	[4.2] 부모, 지도자, 교육자 및 아동용 가이드라인 준비	[5.2] COP 관련 활동 요청
3	정부, 기구, 교육자용 실용적 도구 개발	[1.3.1] 기존의 법적 틀 검토	[2.3] COP 위협측정 글로벌 보고서	[3.3] COP 툴킷 개발	[4.3] 각국의 COP 툴킷 이행 지원	[5.3] “디지털 시민 자질” 문화 개발
		[1.3.2] COP 달성 위한 기본틀 개발				
4	국제 전략적 파트너십 촉진 및 정보 공유				[4.4.1] COP 활동 및 툴킷의 증진 위한 행사 운영	[5.4] 정보공유를 위한 방식 설립
					[4.4.2] ITU가 관리하는 COP 자원 기반 개발/만들기	

자료: ITU(2010b)

ITU BDT는 그동안의 COP 이니셔티브 활동을 소개하고, COP 2009 서베이⁴⁾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서베이는 온라인 아동보호 정책과 규정의 프레임워크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ITU 191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서베이를 통해 회원국은 현재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불법 콘텐츠를 지적하였으며, 기타 유해한 콘텐츠, 사이버 괴롭힘(bullying or harassment)도 심각하다고 답변하였다. 이 외에도 성(性)매수(sexual predator), 섹스 여행, 사기, 재정적 사기, 명의도용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다. 한편, 온라인 아동보호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질의에서는 최빈개발국 7개국은 관련 담당부처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온라인 아동보호 관련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37개국만이 해당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명확히 답변하였고, 답변국 중 약 60%의 최빈개발국은 그러한 프로그램이 없거나, 유무여부를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관련 법적 틀에 대해서도 35개국만이 명확히 있다고 답변하였고, 17개국은 없거나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나아가 온라인 아동보호 활동을 위한 인터넷 산업과의 협력관계에 있어서는 29개국만이 수행중이라 답변하였고, 그 외 응답국은 모르거나 안한다고 답변하였다.

BDT는 또한, 온라인 아동보호 관련 정책의 개발, 이행 및 평가와 더불어,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통계적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의 개발이 필수적임을 설명하였다.

(2) 회원국의 기고문 발표

회의에 참여한 유럽연합(EU)과 불가리아, 스웨덴, 슬로바키아, 이집트,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등의 회원국, 그리고 이탈리아 텔레콤 등 부문회원은 온라인 아동 보호를 위한 자국의 노력과 성공사례를 공유하였다.

우선 EU는 1999년에 개시한 ‘보다 안전한 인터넷 프로그램(Safer Internet Programme)’

4) 2009년 10월~11월 온라인을 통해 수행, 총 50여개국 답변.

을 소개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온라인상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유해 온라인 콘텐츠 및 행위를 근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젝트 운영, 국제협력활동 수행, 행사 개최 및 지원, 업계의 자율규제(self-regulation)활동 지원 등의 방법을 통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U는 헬프라인(Helpline),⁵⁾ 핫라인(Hotline)⁶⁾ 등을 제공하는 ‘보다 안전한 인터넷 센터’를 운영하고, 불법 콘텐츠를 척결하기 위해 COSPOL(유럽 법집행기구의 네트워크), I-Dash(아동 성적남용 관련 관리용 운영시스템 개발), FIVES(이미지/비디오 심사 지원 조사도구 개발) 등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EU KIDS Online II, POG 등 청소년의 신기술 사용과 관련된 지식기반을 설립관련 프로젝트, 시민사회 참여 프로젝트, 필터링과 콘텐츠 라벨링 프로젝트 등을 운영한다. 또한, 국제적 차원에서 타 기구(OECD, 인터넷 가버넌스 포럼(IGF), 유럽이사회, INTERPOL, ITU) 등과 공조하고 있으며, 관련 행사로 매년 ‘보다 안전한 인터넷의 날,’ ‘보다 안전한 인터넷 포럼’을 지원·개최하고, EU 산업계의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EU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5,500만 유로(약 790억 원)를 투자하여 웹 2.0, 모바일 기술, 사이버 그루밍,⁷⁾ 괴롭힘 등의 온라인 유해활동 등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관련된 지식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불가리아는 2006년 5월부터 ‘보다 안전한 인터넷 사용에 관한 공공이사회’의 감독 하에 운영중인 ‘불가리아 핫라인(<http://www.safenet.bg>)’을 소개하였다. 본 이사회는 공공기관, 지자체, 산업협회, ICT 기업 및 비정부부문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한 협력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불가리아 핫라인은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보고를 받아 대응하고, 보다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활동의 우선순위는 아동의 성적학대 이미지 배포에 대처하는 것이나, 최근에는 그루밍, 사이버 괴롭힘 또한 주요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5) 안전한 온라인 사용을 위한 개인화된 조언을 제공.

6) 불법 콘텐츠를 신고.

7) 성적욕구를 위해 아동에게 고의로 접근하여 친절하고 다정다감한 척 유인하는 것.

스웨덴은 인터넷에서 신뢰와 신용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에 개시한 ‘SurfaLugnt (<http://surfalugnt.se>)’ 운영 사례를 공유하였다. 본 사이트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구 간 협력체제로 구축되었으며, 인터넷 안전과 관련된 정보와 교육을 위한 플랫폼으로 유용한 발표자료, 보고서, 백서 등을 공유하고, 온라인 상 문제에 직면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팁, 도구 등을 수록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의 관련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이 운영되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자국의 미디어 교육관련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고, 더욱 안전한 인터넷 및 온라인 관련 신기술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부처, 사회단체, 슬로바키아 UNICEF 위원회 등 다양한 관계자로 구성된 ‘Zodpovedne.sk’ 프로젝트를 소개하였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슬로바키아는 ‘보다 안전한 인터넷 인지 센터’인 ‘Zodpovedne.sk(<http://www.zodpovedne.sk>)’를 세우고, 헬프라인(<http://pomoc.sk>)과 핫라인(stopline.sk)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이집트는 e-안전전략을 위해 법 집행, 법률, 자율규제, 기술 솔루션, 교육, 인식제고/콘텐츠 등 6개 항목의 통합된 전략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된 자국의 현황을 소개하였다. 더불어 ITU의 아동보호 어젠다를 위해 WG-CP에게 △ 주요 구성요소 파악, △ 다양한 성공사례 제공 △ 아동 e-안전을 위한 정규 연구 및 통계조사 수행/조정, △ COP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전문가, 성공사례, 기술 솔루션 공유 △ 전문가와 대화할 수 있는 열린 채널 유지, △ 적절한 모니터 시스템/지표의 파악 등을 제안하였다.

한편, 스웨덴 우편통신청(Post and Telecom Agency)은 시스코와 공동으로 제출한 소셜 네트워크에 관한 기고문을 통해, 일부 소셜 네트워킹 어플리케이션이 “업로드되는 모든 사용자의 콘텐츠는 소셜 네트워크가 소유하게 되며, 이에 영원히 본 서버에 저장될 수 있다”라고 약관에 서술하고 있고, 더 나아가 “사용자 정보를 마케팅 및 광고의 목적으로 다른 단체와 공유할 수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는 경우를 지적하며, 본 작업반이 소셜 네트워킹 제공자가 콘텐츠 소유권에 대한 자율규제를 하고, 아동과 청소년이 이해하기 쉽도록 약관을 더욱 평이한 문장으로 서술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더불어 ITU는 소셜 네트워크 제공자가 사용자 제작 콘텐츠의 소유권에

대해 올바른 행동을 취하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말레이시아는 온라인 상 아동보호를 위해 부모들이 유념해야할 사항을 소개하고, 모리셔스는 자국의 ‘온라인 아동안전위원회’를 설립 및 운영 현황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통신대학(Odessa national academy of telecommunications n.a. O.S. Popv)은 대학에서 개발한 부적절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접근 제한 시스템⁸⁾의 원리와 운영현황을 보여주었다.

(3) 온라인 아동보호 작업반의 향후 계획

WG-CP는 향후 COP에 대한 ITU의 전략 이행, 아동 헬프라인(116, 111) 가동, 개도국의 COP 법안 초안 작성 지원, 국가차원에서 COP 이행을 위한 로드맵 작성 및 가이드라인 이행 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유관기관과의 국제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ITU 개발부문(ITU-D) 프로그램과, 표준부문(ITU-T) 연구반 2의 아동 헬프라인과 관련 작업 내용을 함께 고려하며, 6월에 예정된 2차 회의 전까지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 의견교환 및 관련 업무를 지속할 예정이다.

4. 결 어

ICT 사용에 있어서의 신뢰와 안전은 ICT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건강한 글로벌 정보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근본적인 요소이다. 온라인 상 아동보호는 글로벌 사이버 보안 이슈 중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로, ITU를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가 이를 위한 활동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2008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OECD 장관회의를 통해 아동의 안전한 온라인 활동을 위한 각국 정부, 법집행기관 등 간 협력의 확대를 촉구한 바 있다.

현재까지 ITU의 온라인 아동보호 관련 활동은 초기 구축단계로, 관련 활동의 방향

8) 교육기관 및 호스텔에서 부적절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

성과 작업방식을 논의하고, 관련된 세계 각국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ITU가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온라인 아동보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폭넓고 다양한 정보수집 및 관련 기초통계 구축작업과 더불어 이와 관련된 기존 이니셔티브 및 주요 국제기구, 시민단체, 업계 등 주요 관계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ITU의 이러한 노력에 발맞춰, COP 이니셔티브 및 온라인 아동보호 작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우리나라의 사이버 보안 활동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타 국가 및 국제기구의 사례, 가이드라인 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실상에 맞는 적절한 정책을 구축하며, 온라인 세상에서 가장 취약한 참여자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윤재석·송혜인 (2009), “주요 국제기구 정보보호 논의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주간기술동향》 통권 1314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ITU (2010a). “Outcome of the 1st Meeting of the ITU Council Working Group on Child Online Protection”, WG-CP/1/16 Rev.1.
- ___ (2010b). “Contribution from ITU Secretariat: ITU Proposed Strategy on Child Online Protection”, WG-CP/1/10.
- ___ (2010c). “Contribution from ITU Secretariat: Child Online Protection (COP) Initiative”, WG-CP/1/11.
- ___ (2010d). “Contribution from European Commission–Information Society & Media Directorate General”, WG-CP/1/4.
- ___ (2010e). “Contribution from Bulgaria on Child Online Protection”, WG-CP/ 1/6.
- ___ (2010f). “Contribution from Swedish Post and Telecom Agency and Cisco”, WG-CP/1/15.

<http://www.itu.int/cop>